



건설노동자 시각에서 본 추락재해 문제점과 해결방안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실장 전재희



현황

2024년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사이렌

- 건설업으로 분류된 사례는 242개
- '떨어져 사망' 150건(61.9%)
- 안전대 등 안전시설 구비를 예방대책으로 제시 85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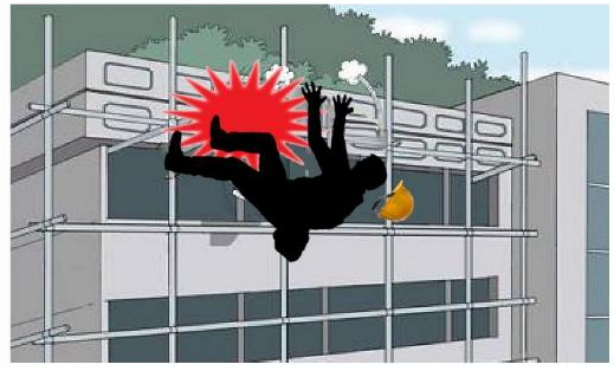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시
안전난간 및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 후 고리를
안전대 부착설비에 체결하고 작업을 수행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알림

배포일시 : 2024년 7월 22일 15:30

중대재해 사이렌

'24년 7월 19일(금) 08:30경 서울 강남구 소재 00철거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건물 외부 비계 해체 작업 중 9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예방대책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합니다.
-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지급·착용하게 하고 안전대 고리 체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OPEN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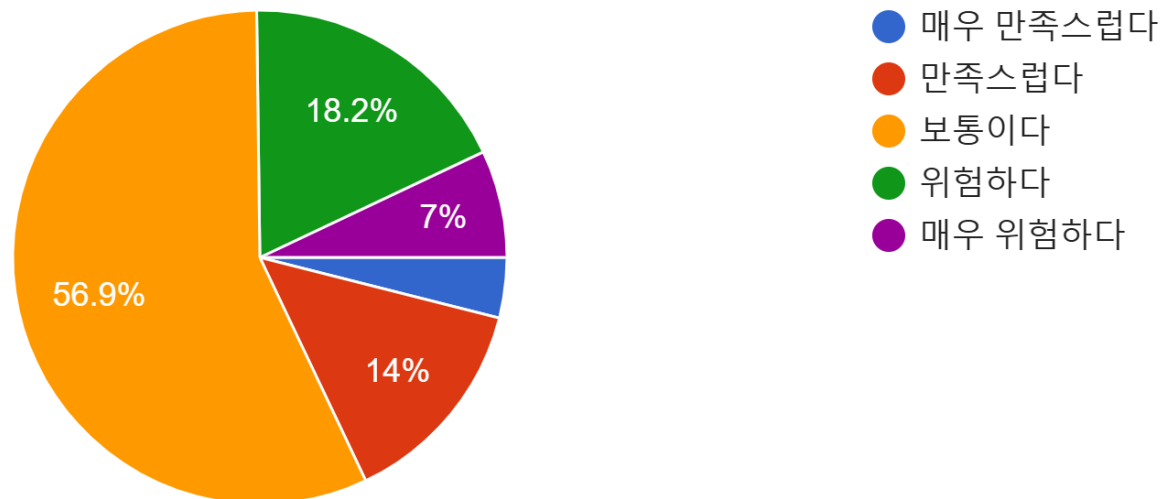


현황

2024년 민주노총 건설노조 설문

- 2024년 1월 스마트폰 구글독스 설문/ 건설노동자 2,654명 대상
- 안전발판이나 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 상태가 만족스러운 건설노동자는 10.9%

지금 일하는 현장의 안전발판이나 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 상태는 어떻습니까
응답 2,635개





현황

총공사비vs안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시행 2025. 1. 1.] [고용노동부고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평균 19% 인상

구 분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비율(%)
						적용 비율 (%)	기초액	
건 토 중 특	축 목	공 공	사 사	사 사	3.11%	2.28%	4,325,000원	2.37%
					3.15%	2.53%	3,300,000원	2.60%
	건 수	설 설	공 공	사 사	3.64%	3.05%	2,975,000원	3.11%
					2.07%	1.59%	2,450,000원	1.64%



문제점

법제도와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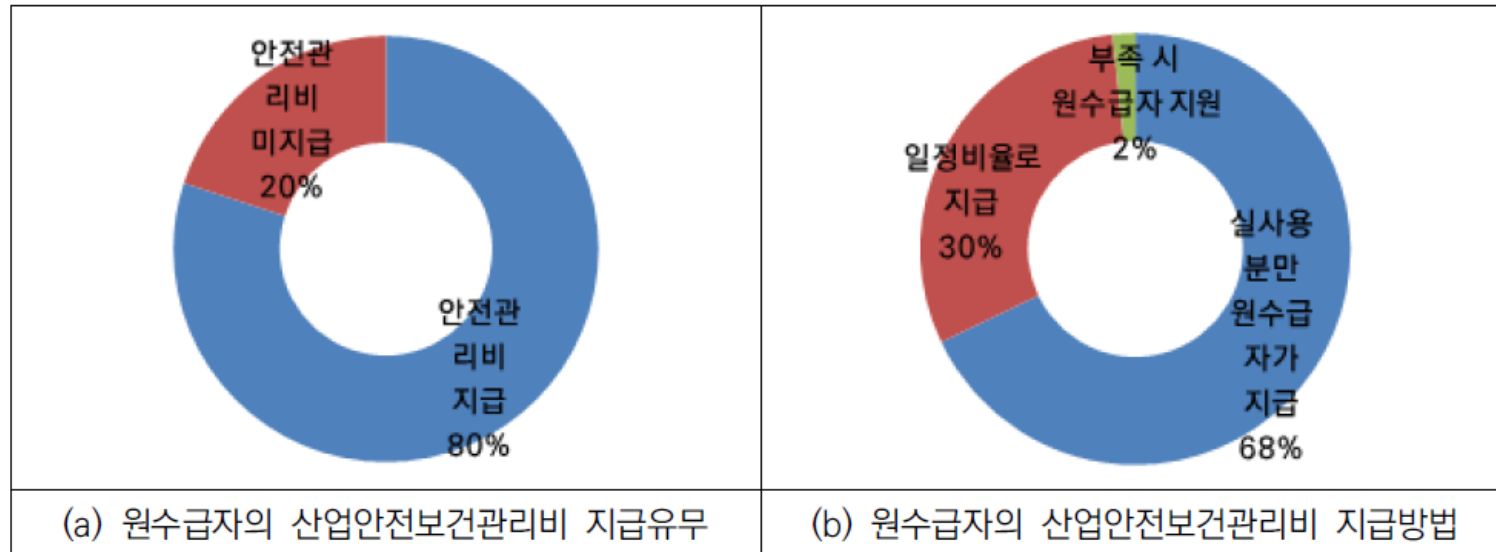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2024. 6. 28.>
- 보호구=안전모, 안전대(安全帶), 안전화 등





문제점

법제도와 현실



〈그림 2-2〉 원수급자의 하수급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 유무 및 방법

자료 :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보고서, 2021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지급 20% & 일정비율 지급(30%) 실사용분만 지급(68%)
- 하수급자의 40%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하다고 인식
- 부족분을 현장경비 또는 이윤을 전용하여 처리 79%



문제점

중소규모 현장

- CSI자료에 따른 전체 유형 대비 추락사망재해율 : 50억 미만(소형) 58.6%(355명), 50억~300억 미만(중형) 56%(134명), 300억 이상(대형) 34.7%(236명)

4

“아무 것도 안 했습니다, 몰랐습니다”
황당한 시인

<표 3-1> 발주유형×공사규모별 주요 사고유형

구분		소계	떨어짐		깔림		물체에 맞음	
			사망자 수	비율(%)	사망자 수	비율(%)	사망자 수	비율(%)
발주 유형별	공공	230	71	30.9%	65	28.3%	24	10.4%
	민간	509	301	59.1%	73	14.3%	42	8.3%
공사 규모별	대형	236	82	34.7%	55	23.3%	29	12.3%
	중형	134	75	56.0%	15	11.2%	14	10.4%
	소형	355	208	58.6%	65	18.3%	22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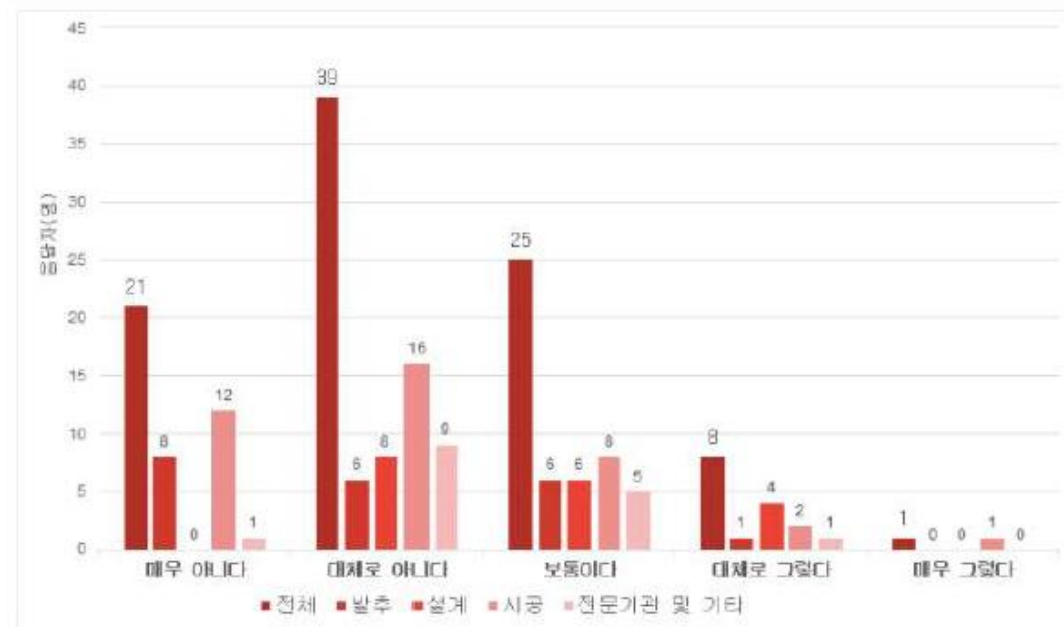
요양병원 중축 현장의 현장 안전관리자는 작업자들이 그 존재도 몰랐던, D기업의 서윤호 이사였다. 그는 1999년에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서윤호 이사는 조사에서 ‘몰랐다’는 대답밖에 하지 못했다. 모르쇠가 아니라 정말로 알아야 할 것들을 인지하지 못한 ‘무지’ 상태였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중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침과 목표 설정(시행령 제4조 제1호),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절차 마련(시행령 제4조 제3호)도 모르고 있었다. 또한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됐음에도 서윤호 이사는 고용노동부에 선임 신고가 돼 있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문제점

「산업안전보건법」과 발주자, 적정공기

- 산업재해예방(제5장)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50억 이상 건설 발주자는 유해·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공사계획·설계·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1항), 설계자 및 원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시공 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설정하도록 하고 있다(3항).



[그림 IV-22] 안전보건대장 제도 향후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응답 분포

- 출처 : 안전보건공단 <건설공사 발주자 안전보건대장 제도 개선방안>



문제점

「건설기술진흥법」과 발주자, 적정공기

- 건설공사의 관리(제5장)
- 제45조(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LH 공동주택 공사기간 산정 기후·공종·지역별 여건 반영

LH, 공동주택 공사기간
산정 개선 주요방안



- 동절기를 골조공사 불능기간으로 산정할 경우 공사기간·공사비 등 공사관리에 미치는 영향 검토
- 우기 등에 총당 실적 공기 분석 등을 통해 골조공사 적정 공기 도출
- 최근 10년간 기상데이터를 반영해 비작업일수 업데이트
- 공정·지역별로 다른 비작업일 산출 기준도 손질
- 도심지·소규모 공사에 대한 공사기간 보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 공사기간 산정기준 업그레이드에

二期 산정방식 정비 본격화

정 때 비작업일수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향 K-건설안전

불법도급 근절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 역할 명확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역할과 용처 명확화
- 총괄책임 명확화
- 실질적인 스마트안전

발주자 책임 강화 및 적정
공사기간 보장

- 발주자를 통한 적정공기, 적정공사비 산정을
유인, 의무화
- 안전, 품질 우선 공사기간 유연화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노동자
참여 보장 및 강화

- 원청 시공사 작업중지권 보장 확대
- 노동자 참여 보장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자 임금
= ?
- 서울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
2023년부터 서울 관
내 모든 건설현장
대상 주요 5개 공종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속상한 '검색하기' 버튼,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찾으세요'

모

- ① 부패투쟁은 서지식 전 부패투쟁의 부패행위의 양적, 질적 확보 및 고도화 및 정합화
원인 분석, 신고 조사 수습 및 제반절차 등을 통적으로 추진하는 공시현장 운영체계 마련
리 기준 마련을 위하여 작성하였음
- ② 매뉴얼작성 등 절차적 접근 시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적용하기 버려라. 시
행 지침에 의거하여 적절하게 관습에서, 각급의 현안사항에 따라 적용할 수 있음

목차

1. 일반사항

- 도입 목적
- 경영성 활용 대상 부서
- 활용 종류 및 장단점
- 농민장 활용 세부 절차
- 편식, 가이노 라인

2. 동영상 세부 촬영 및 제출 방법

- 전경 촬영
- 송요송송 촬영
- 검측 촬영
- 상시 촬영
- 세술 뒷 단리 명



자세히 보기

간접등사 동역상 기록관리 / 1 자세이보기

1. 도입 목적

본래의 뜻으로 보면 이 글의 주장은 「표준국어대사전」의 「부패」가 「부패」라고 아예 써서 되고 있지
수 없는 원인이 아니라 부패의 관치, 즉 부패의 관치 시 부패가 부패할 때 원인이 파악된 다음
이 원인 제거에 의해 간접적으로 부패의 관치에 있어서 간접적자가 원인이 파악될 수 있도록
부패의 관치에 있어 부패의 관치에 있다.

2. 동영상 촬영 대상공사

구분	공서종류	필수형영합목			
		전경촬영	중요공종촬영	건축촬영	상시촬영
1	서울시, 서울시 출연기관, 자치구 별주 100억 이상 모든 공사현장 (민자사업 포함)	○	○	○	○
2	서울시, 서울시 출연기관, 자치구 별 주 100억 미만 모든 공사현장 *자치구는 시비 지원 사업만 해당됨	선택	○	*5개 주요공종	선택
3	허가 및 사업승인 조건으로 부여된 모든 민간공사현장	선택	선택	*5개 주요공종	선택



개선방향

발주자 적정공기 산정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습니다!**

안전이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건설현장에 안전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발주자부터 설계·감리자, 시공사까지!

건설 주체별 안전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발주자

- 적정 공사기간·비용 제공
- 안전관리정보 및 등급을
확인하여 공사참여자 선정



설계자

- 안전시설물 설치기간 및
비용을 설계에 반영
- 건설시공 위험요인
설계도서에 명시 의무화



감리자

- 사고 위험상황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권한 확대
- 감리 승인 후 작업하는
작업허가제 대상 확대



시공사
(원수급인)

- 하수급인이 공동사용하는
안전시설물 직접설치
- 가연성 물질 취급과
용접 작업 동시진행 방지
- 근로자 안전의무(음주 등)
위반 시 작업 임시배제



개선방향 노사상생

경향신문

인쇄하기

취소

"좋은 귀감"...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삼성 칭찬'한 이유?

입력 2024.04.17 17: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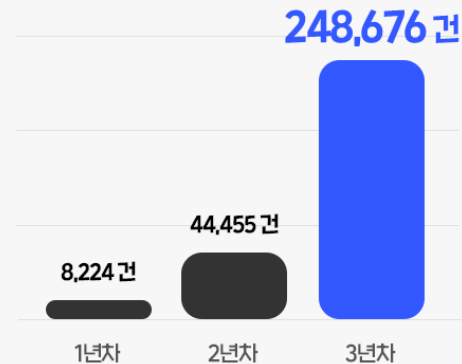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삼성물산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삼성을 칭찬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와 업계도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노조는 17일 성명을 내 "건설현장에서 원청 시공사가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것은 건설노동자에게 일대 혁신이며, 건설기업의 입장에서 긍정적"이라며 "노조 조합원들 역시 삼성 현장의 작업중지권을 높이 사고 있다"고 했다. 작업중지권이란 산재 사고 등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법적 권리다.

건설노조는 "원청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하청 건설사들조차 작업중지를 하기 어렵고, 심각한 고용불안에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중지권을 요구하긴 힘들다"며 "이런 가운데 원청 건설사가 작업중지를 보장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했다.

작업중지권 시행 후 연차별 활용 건수



3년

작업중지권
시행 건수

89.1%

1~2시간 내 조치
완료되었다는
근로자 응답비율

93.1%

타사 현장에서도
작업중지권을 사용하겠다는
근로자 응답비율

210명

작업중지권 행사
100회 이상 근로자 수

597건

작업중지권 최다 행사
근로자의 활용 건수

2,022명

작업중지권 행사
30회 이상 근로자 수

22,648명

작업중지권 행사
1회 이상 근로자 수

301,355 회

삼성물산의 누적 작업중지권 행사 수



감사합니다